

세무회계저널
제14권 제6호 2013년 12월 pp.9~37
한국세무학회

전자장부시대의 등장과 활성화 방안

김상문* · 서희열**

<요 약>

IT의 발전과 컴퓨터의 보급은 기장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 종이로 된 거래증빙을 가지고 수기로 장부와 신고서를 작성하던 형태에서, 거래증빙을 회계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몇 가지 조정을 거쳐서 장부와 신고서를 만드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재는 이러한 입력과 장부작성 등의 업무도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장부가 다양한 모습으로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본래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부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다. 이러한 장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 사무실에서는 다시 같은 거래증빙을 가지고 세무신고용 장부를 따로 만드는 비효율이 존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두 가지 장부가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비효율은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단순 기장대행과 세금신고에 머무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세무대리인 사무실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거래증빙의 수수료와 입력, 장부작성이 자동화됨으로써 기장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 전자장부는 사업자들이 작성한 장부를 활용하여 바로 세무신고가 가능함으로써, 세무대리인이 추가로 세무신고용 장부를 만들기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인력과 시간을 절감시켜준다. 이러한 비용절감의 혜택은 사업자와 세무대리인 사이에서 그 역할에 따라 적절히 분배되어 사회적 편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고, 세무대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업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의 감소는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보다 촉진할 것이고, 세무대리인은 단순 기장대행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자의 회계·세무처리기준을 간소화하여야 한다. 특히 소규모사업자는 경영정보 획득을 위한 회계의 목적보다는 세금신고를 하기 위한 장부작성의 목적이 크므로 이들이 손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나 세무처리지침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전자장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전자증빙을 확대·보급하고 전자보관 사업을 추진하여 사무실의페이퍼리스(paperless)화를 지원하는 등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전자장부, 자동장부, 납세협력비용, 전자증빙

* 세무사, 강남대 대학원 세무학과 박사과정, taxsolve@hanmail.net, 제1저자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suhhy810@hanmail.net,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3년 3월 16일

1차수정일 2013년 10월 14일

2차수정일 2013년 11월 19일

게재확정일 2013년 11월 26일

I. 서 론

우리나라 세목의 대부분은 신고납부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자들이 주로 접하는 대표적 기업과세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사업소득) 모두 신고납부방식으로 납세자가 직접 자신의 사업 내용과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를 위해 납세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업내용을 기록한 장부가 필요하다.

장부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사업내용을 기록하고 검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제대로 된 복식부기 장부로부터 간단한 메모나 노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심지어 사업자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세무신고용 장부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필요로 하므로 일정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기준으로 세법에 맞는 조정을 하여 작성된다. 이러한 과정은 회계와 세무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사업자들은 이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대부분 회계와 세무는 어렵고 골치 아픈 것으로 생각하여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장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볼 기회가 많지 않고, 설사 기회가 있더라도 세무회계장부는 어렵다는 선입견으로 잘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대신에 사업자들은 자신의 내부관리용으로 엑셀과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POS ; Point Of Sales)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내부관리용 장부와 세무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세무신고용 장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며, 두 장부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장부작성을 이중으로 하게 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두 장부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 세무대리인은 회계와 세무에 관한 정상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우며 세무서비스는 단순 기장대리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또한 두 장부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인력이 각각 투입되기 때문에 비용이 이중으로 부담되게 된다.

한편, IT산업의 발전은 회계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와 같은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에 비해서 사용이 간편해진 회계프로그램은 사용자가 가계부처럼 간단하게 숫자만 입력하면 많은 회계지식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처럼 그 거래가 단순하고 정형적이며 복잡하지 않은 경우 간단한 입력만으로 거의 100% 자동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과 스크래핑¹⁾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입력마저도

1) ‘스크래핑’은 자동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데이터를 화면에 나타나게 한 후 필요한 자료만을 추출해 가져오는 기술이다.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 다른 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때문에 웹스 크래핑(Web Scraping)이라고도 하며, 데이터를 저장하므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며, 저장된

필요 없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회계담당자는 회계프로그램의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국세청의 e세로²⁾에 접속하여 이곳의 자료를 가져와 한꺼번에 입력할 수도 있다. 즉,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내역, 은행거래내역 혹은 엑셀로 된 거래내역 등을 모두 한 번에 회계프로그램에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세무대리인 사무실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거래 증빙의 수수료와 입력 과정이 거의 자동화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 세무대리인의 업무 형태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올 것이고 이러한 변혁은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세무대리인은 현재와 같은 단순 기장대리에서 나아가 다양한 종류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사업자들도 자신의 장부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이를 사업경영에 활용 할 수 있고, 세무신고에 있어서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세무신고를 하거나 같은 비용이라면 더 나은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장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초보적인 단계로 실용화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점점 많은 프로그램이 보다 발전된 형태로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대중화되면 기존의 세무대리인 세무서비스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물론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 감소에도 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납세협력비용감소와 관련하여 최근에 도입되었다가 폐지된 성실납세제도(간편납세제도)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전자장부의 활성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전자장부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계산이 간편해지면 납세협력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장과 전자장부에 관한 일반이론으로서 최근의 세무대리인의 증가에 따른 기장시장의 변화와 컴퓨터 기술발전에 따른 전자장부의 등장과 효과 그리고 그 발전 과정과 현황을 살펴본다. 전자장부는 그 개념자체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그 배경이 되는 몇몇 연구들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 보는 것이 전자장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 후 이러한 전자장부를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데이터를 가공하여 비교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2011.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법인사업자부터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e세로를 이용하면 된다. 발급수수료는 무료이지만 발급회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대량발급이나 추가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민간 기업이 만든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한다.

II. 기장과 전자장부에 관한 일반이론

1. 기장과 성실신고와의 관계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장부(帳簿, books)는 “물건의 출납이나 돈의 수지, 계산을 적어 두는 책”이라 정의되고 있다.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재무적 사건이나 거래를 장부에 기록한다. 주부가 살림살이의 내용을 가계부라는 노트에 기록하는 것도 일종의 장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부를 통해 기록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며 이를 미래의 사업에 반영한다.

이러한 장부를 작성하는 행위를 기장(記帳)이라고 하는데, 기장하는 방법은 가계부와 같은 간단한 단식부기와 대차평균원리에 의한 상호검증이 가능한 복식부기의 형태가 있다.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에 비해 보다 의미있는 여러 가지 회계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나 세무신고와 같은 공신력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회계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기업내부에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에게 기장을 위임하기도 한다.

세금의 신고와 납부는 납세자의 능력과 현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기초가 바로 기장이므로, 기장과 성실신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장에 따른 비용의 지출은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오히려 성실신고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효율적이면서도 최소의 비용으로 기장하는 방법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촉진케 한다고 볼 수 있다.

2. 기장시장의 현황

가. 세무대리인 증가

현재 세무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는 현행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와 변호사 그리고 현행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이다. 아래의 <표 1> 세무대리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 31일 기준 13,584명에 달하던 세무대리인이 매년 약 11%씩 증가하여 2009년 12월 31일에는 약 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세무사 등록인원만 놓고 보면 2009년 12월 31일 8,235명이던 등록 인원이 2010년 12월 31일에는 8,715명으로 늘어났고, 2011년 12월 31일에는 9,120명으로 증가하였다. 공인회계사는 2009년 12월 31일 8,876명이던 등록 인원이 2010년 12월 31일에는 9,368명으로 늘어났고, 2011년 12

월 31일에는 9,786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합치면 매년 약 1,000여명 가까운 세무대리인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 그리고 새롭게 법률시장으로 진입하는 로스쿨졸업생들을 고려하면 세무대리인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세무대리인 등록현황

구 분	합 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2005년	13,584	6,622	6,447	515
2006년	14,382	7,014	6,819	549
2007년	15,231	7,424	7,221	586
2008년	16,448	7,798	8,030	620
2009년	19,677	8,235	8,876	2,566
2010년		8,715	9,368	
2011년		9,120	9,786	

주) 자료 :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 p.975.

국세청은 2010년부터는 세무대리인 등록현황을 『국세통계연보』에 발표하지 않고 있어 2010년과 2011년은 각 자격사 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한 숫자이다.

나. 기장시장의 위기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전문자격사의 급증현상으로 매년 700명에 가까운 세무사와 약 1,000명에 가까운 공인회계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로스쿨로 인하여 늘어난 변호사들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무사는 본래 기장을 본업으로 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는 본업인 감사·컨설팅 시장의 포화로 기장시장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들도 본업인 송무나 법률시장의 포화로 말미암아 세무시장 특히 그 중에서도 세금관련 소송이 아닌 단순 기장시장에도 점차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세무대리인의 증가는 수수료의 인하와 거래처 확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무대리인 간의 경쟁은 점차 격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경쟁은 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오지만, 지나친 경쟁은 서비스 경쟁을 넘어 가격 덩핑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의 증가 그리고 서비스 품질의 저하를 초래한다. 기존의 단순 세무대리 시장에서는 그 서비스의 품질 차이가 쉽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상당히 낮은 가격을 무기로 경쟁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부실한 세무서비스 제공이라는 문제를 초래하거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세무대리인 사무실의 급증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기장시장의 전망

이와 같은 기장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세무서비스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세무대리인은 단순 세무신고로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는 최소의 비용으로 세무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고, 가격보다는 좋은 품질의 세무서비스와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는 그에 맞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어야 하는데 ‘전자장부’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은 초기에는 현재의 관행적 방법을 고수하려 하겠지만, IT산업의 발전과 세무환경의 변화로 그 유용함이 입증된다면 이는 머지않아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세무대리인의 주요 고객은 중소기업자들이다. 이들은 대개 매월 100,000원에서 200,000원의 기장 수수료를 지불하고 일 년에 한 번, 조정 수수료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한 사업자들은 편법으로 협회 등의 조직을 이용하거나 무자격 세무대리인을 통한 덤핑거래 혹은 불편을 감수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직접 세무신고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상적인 세무시장 밖에 놓여있는 영세사업자들을 정상적인 세무시장으로 안으로 유도하여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장 관련 수수료에 대한 지출비용을 인하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더 이상의 비용인하는 쉽지 않으므로 전자장부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정상적인 기장시장의 외연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전자신고와 전자장부의 현황

가. 전자장부의 등장

기업은 자신의 사업·재무활동에 대하여 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증빙등을 발행하고, 이를 거래 당사자와 주고받는다. 기장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주고받은 증빙내용을 노트(장부)에 옮기고 이를 가감하거나 평균을 구하는 등의 계산을 통하여 필요한 수치 등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한다. 사람의 손이 많이 투입되는 이러한 기장은 그동안 컴퓨터와 회계프로그램의 도움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과거 회계담당자는 주판이나 계산기를 이용하였지만, 지금은 이러한 도움이 없이도 회계프로그램에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상당부분 자동으로 이루어져 장부가 작성된다. 물론 이렇게 작성된 장부도 프린트를 하게 되면 기존의 종이형태로 바뀌므로 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컴퓨터와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장부를 모두 ‘전자장부’라고 부르는 것은 어렵다. 컴퓨터와 회계프로그램은 주판·전자계산기나 노트를 대신하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컴퓨터와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장부와 신고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파일형태로 변환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무신고 하는 장부”를 ‘전자장부’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중에서 사용되는 세무신고가 가능한 회계프로그램이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운용하는 홈택스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하여 세무신고를 하기는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는 기능이 미약하고 이를 수시로 열람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전자장부’라고 하기보다는 단순한 전자신고용 프로그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장부’에 대한 정의를 앞에서 서술된 내용보다 더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세무대리인을 이용한 세무신고방법은 고객이 사업과 관련된 증빙 즉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일반영수증, 급여내역 등 모든 원시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고, 세무대리인은 이를 분류하고 정리한 후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장부를 만들어 세무신고를 하는 방식(off-line 기장대리)이다. 이러다보니 고객의 내부관리용 장부와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용 장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설사 일치하더라도 두 곳에서 장부를 작성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반면에 고객이 직접 원시자료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장부를 만들고, 세무대리인은 고객이 장부를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부는 세무대리인이 검토하여 고객과 공유하며 이를 활용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방식(on-line 기장대리)이다. 이를 시중에서는 ‘전자장부’, ‘자동장부’ 혹은 ‘인터넷장부’, ‘인터넷기장’이라고 하는데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전자장부’는 이러한 ‘좁은 의미의 전자장부’ 즉 ‘세무신고를 위한 자료입력의 대부분이 불러오기 기능 등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장부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성되며 약간의 조정사항을 거친 후 전자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나. 전자신고의 현황

우리나라 세법상 주요 세목의 전자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기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의 전자신고 비율은 각각 74.1%, 80.0%, 96.0%, 93.3%이었으며, 2011년에는 각각 80.3%, 87.8%, 97.5%, 98.4%로 나타나고 있다.

즉, 총 신고건수 중 전자신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모든 세목에서 매년 점차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인터넷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그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세무신고도 이전의 서면으로 하던 형태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로 바뀌었고, 그 비율이 최근까지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2011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 하는 건수가 1,896,374건으로 2010년의 1,751,118건보

다 145,256건이 증가하여 그 증가율이 전년대비 8.3%에 이른다. 한편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하는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2,500,442건으로 2010년의 2,357,304건보다 143,138건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증가율 6.1%에 불과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보다 2.2%이상 낮게 나타난다. 즉 납세자들이 직접 전자신고 하는 경우가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표 2〉 주요 세목 전자신고 현황

구 분	총 신고건수 (1)	전자신고건수			비율 (5=2/1)
		합계(2=3+4)	본인(3)	세무대리인(4)	
부가가치세					
2008년	11,372,565	8,429,093	—	—	74.1
2009년	11,929,903	8,895,728	—	—	74.6
2010년	12,163,373	9,613,232	—	—	79.0
2011년	12,547,309	10,072,675	—	—	80.3
종합소득세					
2008년	4,888,581	3,909,161	—	—	80.0
2009년	4,516,871	3,767,046	1,548,149	2,218,897	83.4
2010년	4,703,854	4,108,422	1,751,118	2,357,304	87.3
2011년	5,005,424	4,396,816	1,896,374	2,500,442	87.8
법인세					
2008년	401,819	385,860	—	—	96.0
2009년	421,145	404,859	—	—	96.1
2010년	440,088	428,268	13,328	414,940	97.3
2011년	465,262	453,410	14,113	439,297	97.5
원천세					
2008년	5,324,708	4,969,153	—	—	93.3
2009년	5,668,650	5,447,685	—	—	96.1
2010년	6,162,746	6,052,596	1,157,075	4,895,521	98.2
2011년	6,730,472	6,623,198	1,185,910	5,437,288	98.4

주) 자료 : 국세청, 「2012 국세통계연보」, 온라인공개(14-3-1)

한편, 세목별로 비교하면 법인세나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천세의 비율이 부가가치세와 개인이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이는 법인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거의 다 전자신고를 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중 아주 영세한 사업자나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들만 서면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즉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인터넷에 익숙하여 이를 활용하여 전자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환경적으로는 낯설지 않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황선철(2010)에 따르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의 수가, 1999년 인터넷뱅킹이 처음 도입된 이후 만 10년만인 지난 2009년 말 기준 가입자 5,921만 명, 일평균 처리규모가 2,799만 건, 29조 원에 이르렀으며 채널비중 또한 63.8%(조회 기준)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모바일뱅킹이 확대되어 한국은행이 2012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말 현재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포함)을 이용하는 고객수는 8,412만 명(모바일뱅킹 1,984만 명 포함)으로 발전하였다.

인터넷으로 뱅킹을 하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으로 세금신고 하는 것을 불안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중에서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뱅킹일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터넷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전자적으로 세무신고하는 환경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세금계산서의 확대 및 세제의 간소화 등 전자장부가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전자장부의 사용도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전자장부의 현황

시중에 본격적으로 ‘On-Line 기장대리’를 선보인 곳은 지금은 없어진 ‘세경세무법인’이다. 2000년대 들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자격자가 세무대리시장에 쏟아져 들어왔다. 반면 기장대리 업체 수는 정체를 면치 못하면서 가격 덩핑이 횡행하는 등 세무대리 업체가 위기감에 휩싸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세경세무법인’은 입력에서 신고까지 모든 것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장부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그 후 뒤를 이어 ‘디지텍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전자장부는 세무대리인이나 소규모 IT업체가 중심이 되어 시장에 등장하였다. 기장시장을 가장 잘 알고있는 세무대리인이나 틈새시장을 찾는 소규모 IT업체들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이를 바라본 것이다. 하지만 기술의 부족이나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발전하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명목만을 유지하는 등 새로운 주류 시장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뒤를 이어 중견 IT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기술적으로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의 장부들이 등장하였고 점차 큰 규모의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1) 타모(TAMO)

세경세무법인은 1999년 IT가 한창 각광받을 때에 이를 세무와 접목시키기 위해 고객이 자료를 전달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를 ‘온라인 토털 세무대리 솔루션

(TISS : Tax Internet Service System)’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 회사인 (주)세경에이엔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허³⁾를 취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06년에 세무대리업체 최초로 온라인 세금신고대행 서비스인 ‘타모 서비스’를 시작해 사업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고객이 이탈되어 어려움을 겪었고, 타모서비스는 현재 매경세무센터를 통해서 그 명맥을 이어 가고 있다.

(2) 디지택스(DZTAX)

디지택스는 인터넷을 이용한 세무서비스이다. 프로그래머 출신인 세무사가 앞에서 언급한 타모를 벤치마킹하여 2005년 4월 처음 출시하였다. 처음에는 ‘예셈’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세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곧이어 10월에 급여관리 및 급여대장, 원천징수신고서를 자동작성하는 예셈 원천징수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다음해인 2006년 4월에는 간편장부 작성을 통한 소득세신고서를 자동작성하는 예셈 소득세신고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다음해인 2007년 11월에 개인사업자용 인터넷 복식부기 서비스인 ‘듀오셈’을 도입하였다. 계속하여 2010년 10월에는 법인사업자용 인터넷 복식부기 서비스인 ‘듀오셈프로’를 출시하고 11월에는 예셈 / 듀오셈 / 듀오셈프로를 통합하여 ‘디지택스’를 오픈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디지택스’는 세무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지보수하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고객응대가 빠르고 업그레이드가 원활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1인이 모든 것을 진행하다 보니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부족한 면도 있다. 또한 프로그램이 단순 세무신고에만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 재고관리나 원가계산 등 장부로서의 기능은 약하며, 프로그램 디자인이나 유저인터페이스(UI ; User Interface)등도 부족한 부분이다. 대신에 가격이 매우 저렴하여 영세한 사업자의 단순세무신고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사용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세무서비스의 종류(간편장부/개인복식부기/법인세무회계)에 따라서 차별화된 요금을 받고 있다.

2012년에는 제휴세무사를 모집하여 업종별 세무프로그램 서비스와 입력에 번거로움을 느끼는 사업자들을 위하여 파일만 등록하면 되는 ‘디지택스 오프’라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모두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는 기본적인 세무서비스의 제공에 치중하고 있다.

(3) 이지샵(Easyshop)

이지샵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한국정보통신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장부서비스 ‘이지샵 자동장부’를 개발하여 2011년 10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이지샵 자동장부를 쓰면 매출(전자세금계산서매출·현금영수증매출·신용카드매출)과 매입(전자세금계

3) ‘간편장부 자동생성 및 세무회계처리를 위한 온라인세무회계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으로 2005년 9월 12일에 ‘특허 제10-0513756호’로 등록되었다.

산서매입·현금영수증매입·신용카드매입), 은행거래내역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은 ‘이지체크’라는 신용카드단말기를 주력으로 하는 IT업체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단말기 시장은 극심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한국정보통신은 자사 단말기 이용 고객들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이탈을 방지함은 물론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기 위하여 전자장부시장에 진출하였다.

한국정보통신은 이지샵 자동장부를 알리기 위해 오픈 초기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시작 후 1주일 만에 페이지 뷰가 4만회를 넘는 등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오픈 2개월만에 회원 수 5,000명을 돌파하고 2012년 초에는 10,000명 가까운 회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제 이를 통해 2012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인원은 약 10%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에도 회원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7월에는 2,000명이 넘는 회원이 무료로 세무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년인 2013년 4월부터 자동장부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여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로 구분하여 요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지샵 자동장부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거래조회 서비스이다. 통합거래조회는 사업자의 신용카드단말기에서 발생하는 매출내역에서부터 은행거래내역과 공과금 등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까지 모든 거래 내역을 한 화면에서 보여준다. 통합거래내역을 이용하면 사업 중 발생하는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일일이 모두 입력하지 않고 마우스 클릭만으로 손쉽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이처럼 거래내역을 끌어와 장부를 작성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장부를 기초로 세무서식을 자동으로 작성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4) 이지세무(Easysemu)

(주)아이퀘스트는 ‘얼마예요’라는 중소기업용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회사이다. 1994년 회사 설립 후 첫 번째 경리 프로그램인 ‘나도 회계사’ 프로그램 출시 이후, 회계·경리프로그램의 베스트셀러인 ‘얼마예요’를 출시하여 국내 15만 기업이 고객으로 등록하였다. 현재는 약 2만 명에 가까운 유료회원을 보유하고 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얼마예요’외에도 보다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 ‘e편한장부’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용 회계프로그램은 (주)더존의 아이플러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이어 ‘sERP’⁴⁾와 ‘얼마예요’, ‘이카운트’⁵⁾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IT회사들의 프로그램에는 대부분 세금신고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고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세금신고가 대부분 부가가치세만 가능한 정도이고,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 Enterprise Resource

4) (주)웹캐시에서 만든 중소기업용 ERP프로그램으로 전국 8개 은행에서 제공되며 약 5만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5) (주)이카운트에서 만든 중소기업용 ERP프로그램으로 웹버전이므로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사용가능하고 월 4만원의 정액에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Planning)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내부용으로만 사용하고 이를 활용하여 세무신고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아이퀘스트는 자사 고객에게 신뢰성을 높이고 타 회사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하여 세무신고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여 이지세무⁶⁾라는 별도의 웹서비스를 통해 ‘얼마예요’와 ‘매직노트’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세무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주)아이퀘스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는 고객은 프로그램 사용료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두 개의 비용을 합하면 다른 전자장부에 비해서는 다소 비싼 요금을 받고 있지만 기존의 오프라인 세무기장료에 비하여는 여전히 저렴한 비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기타 : 슈퍼북(Super Book)

현재 세무대리인들이 사용하는 세무신고용 프로그램은 (주)더존에서 만든 아이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주)더존에서 2012년 12월에 출시한 슈퍼북(Super Computer Book Keeping System)은 기존의 아이플러스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등의 주요 거래자료를 자동수집·자동분개·자동입력하며, 직원 개인명의 카드전표, 영수증 등의 증빙은 이미지를 자동인식하여 자동분개와 자동입력을 한다. 이러한 자동수집·분개·입력 기능은 클라우드 기반 하에서 이루어진다. 자동분개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은 신고서 작성만 하면 세무신고가 가능해지므로 업무효율이 급격히 증가한다.

현재는 단순히 세무대리인 사무실의 업무간소화를 위해 원시자료를 자동수집·입력과 분개하는 기능이 제공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간편장부대상자나 기준경비율대상자와 같은 전자장부대상자들을 상대로 보다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전자장부와 똑같은 기능을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직접 세무신고를 하거나 혹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최소의 비용으로 세무신고가 가능해 질 것이다. 만약 세무신고용 프로그램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주)더존에서 이러한 전자장부를 시장에 내놓게 된다면 세무대리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6) 미국의 사례

한경닷컴의 2012년 7월 4일 기사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400만 명의 자영업자 중 약 30% 정도인 4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미국의 대표적 세무회계프로그램인 Quickbooks를 통해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

6) (주)아이퀘스트의 고객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입력한 데이터가 이지세무(www.easysemu.co.kr)사이트로 연동되어 자동으로 장부작성과 세무신고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세무신고를 위해 다시 자료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Quickbooks⁷⁾는 Intuit사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관리하고 거래를 처리하기 때문에 위치에 상관없이 원격업무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인용 및 중소기업용 회계프로그램으로 사용방법이 매우 편리하고 쉽다. 특히 온라인 बैंकिंग이나 신용카드사용 등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은행에 다니거나 신용카드 전표를 다시 입력하는 불편함이 없다.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도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로 매우 편리하며, 차변과 대변 등의 회계의 개념을 몰라도 완벽한 회계정리가 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Quickbooks는 작은 사무실부터 직원 2~300명 규모의 중견 기업, 특히 서비스나 도·소매 업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징은 장부 기입시 차변과 대변의 구분이 없이 입력할 수 있어 배우기가 쉽다는 점이다. 또한 회계사가 Remote접속을 통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으며, 미국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POS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고, 아울러 미국 최대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인 Turbo Tax와도 완벽한 데이터 연동 및 호환이 이루어진다.

4. 관련규정과 선행연구

가. 관련규정

전자장부와 관련된 관련규정은 많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3항에서 ‘납세자는 제1항⁸⁾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시행령 제65조의 7에 위임하여 위·변조를 막고 검증가능한 형태로 보존해야 함을 규정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장 고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활용하여 보관한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

전자장부와 관련한 규정은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중요하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변하므로

7) <http://quickbooks.intuit.com> 자료 참조

8)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2010.01.01 개정)

세법의 본법이나 시행령에서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국세청장의 고시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나. 선행연구

전자장부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회계자료의 전산화가 보급되면서 정부에서는 기업회계장부의 전산화 추세에 부응하여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해도 장부로 인정하는 제도를 1995년부터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기업회계처리의 편의와 관행을 존중하고 종래에 장부 및 거래증빙 등을 수동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존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었다. 다만, 전자기록의 가시성, 신빙성, 완전성과 기업회계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1998년 말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컴퓨터로 작성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대한 전자기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보존해야 전자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학계에서는 전자장부와 관련하여 최초로 이루어진 연구는 서희열·김상철(2000)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전자장부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한편 심태섭 등(2005)은 영세한 중소기업자들을 위해 전자장부의 장점인 신속성, 간편성, 자동화를 이용하여 이들의 세무와 회계를 간략히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1) 국세청(1999) 고시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고도의 정보화, Paperless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가운데, 회계와 세무분야에서도 전산화가 급속도로 진행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전산화 추세에 맞추어 전산에 의한 신고를 1995년부터 시행하였다. 추후 이에 대한 지침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1999년에 “전자기록의 보존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여 세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자장부의 기준을 만들었고 추후 몇 차례에 걸쳐 이를 보완하였다.

그 골자는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문서보존, 자료의 전산처리과정에 대한 기록보존, 전자기록의 보존요령, 전자기록의 보존기간, 세무조사시 전자기록의 제출 등 납세자 협력, 세무관서장의 확인점검, 전자기록이 아닌 일반문서의 보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등이다. 이는 대체로 전자장부와 이에 의한 신고를 표준화하고 그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기위한 규정들이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전자장부의 사전·사후 검증이 가능하여 전자장부는 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도입될 수 있었다.

이 후에도 국세청의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꾸준히 확대하여 왔는데, 최근에 이루어진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과 확대 그리고 전자계산서 제도 등은 이러한 전산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전자장부의 대중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2) 서희열과 김상철(2000) 연구

학계에서는 서희열과 김상철(2000)이 “우리나라 전자장부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무조사에 관한 연구”를 2000년 5월에 최초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국세청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있는 전자장부제도 전반에 대하여 그 의의와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합리적인 도입 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전자장부를 도입하므로 달라져야 하는 세무조사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사무부담 경감을 위한 전자장부의 도입을 긍정하고, 컴퓨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데이터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위·변조 등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자장부를 작성한 경우에 세무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전자장부의 도입을 시대의 흐름에 맞춘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의 빠른 확대와 정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선결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전자장부제도의 도입을 강제할 것인지, 납세자의 선택에 맡겨둘 것인지의 문제와 전자장부를 이용한 신고의 범위와 역할 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 등 전자장부 도입 초기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이든 전자장부제도가 완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번호제도의 존재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전자적인 정보신고 등과 짜 맞추기 위해서는 각 사업소 등에 있어서 정보의 전산화의 진전이 그 전제로서 필요하다고 하였다.

(3) 심태섭 등(2005) 연구

심태섭 등(2005)은 중소기업자나 기업이 회계와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잡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조세감면제도가 있으나 중소기업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나 세금추징에 대하여 걱정하므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회계와 세무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인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장부를 기록하고, 납부할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성실히 본인소득을 신고하려는 중소기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중소기업자가 회계와 세무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심태섭 등(2005)은 회계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회계기록을 유지하기에 많은 애로점이 있으므로, 전자장부시스템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의 회계기록을 유지하게 하고, 세무조정이 간단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금계산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소득양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주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 발생주의 회계대신 현금주의 회계를 허용하는 것과 세무조정절차를 간편하게 하여 납세신고제도를 간편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추후 정부가 추진한 간편납세제도(성실납세제도)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전오(2008) 연구

2008년 7월에 발표된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이전오(2008)는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OECD국가 동향과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 현황을 살펴본 후에 아래와 같은 11가지의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납세협력비용 조사·분석 정례화, 신고·납부횟수의 축소, 신고·납부기한의 통일성 제고, 분납제도의 개선, 장부·증빙서류 등의 전자보관 허용,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 단계적 확대, 전자신고 및 전자신청 대상의 확대, 신고서 사전작성 안내제도(Pre-filled income returns)의 단계적 도입,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의 단계적 도입,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확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확대’이다. 이 중에서 ‘장부·증빙서류 등의 전자보관 허용, 전자신고 및 전자신청 대상의 확대, 신고서 사전작성 안내제도의 단계적 도입,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확대’의 4가지는 모두 전자장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제도로 전자장부와 이를 통한 전자신고를 통해 세정을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고서 사전작성 안내제도’는 과세권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세 등의 신고서를 사전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납세자가 사전작성 신고서의 오류 여부를 확인한 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별도의 납세협력비용 없이 조세를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발달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전자장부를 넘어서 이러한 과정을 과세권자가 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납세협력비용은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과정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킴으로서 생겨난다고 볼 수 있다.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계산하고 신고하는 신고납세제도하에서 이러한 비용의 발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이러한 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신고납세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납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정부에서 일정부분 대신해 줌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논문과 같은 점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III. 전자장부의 효과

IT기술의 발달과 세무환경의 변화로 전자장부가 더욱 편리해지고 확대된다면 기장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현재 기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상당 부분이 증빙을 수수하고 이를 입력하여 장부를 만드는데 소모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사업자단계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자들은 현재 지급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세무대리인들도 이러한 과정의 절감에 따른 비용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격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며, 이는 세무대리인과 사업자뿐만 아니라 과세당

국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1. 납세협력비용 감소

가. 납세협력비용의 의의와 크기

납세자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외부의 세무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지불하는 세금 이외의 모든 비용을 통칭하여 납세협력비용이라고 한다. 더불어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행정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를 징세비라고 한다.⁹⁾

김형준과 박명호(2008)의 발표 자료에 나타난 납세협력비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여기서 납세협력비용은 외부에 지급하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기업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였으며,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모두 포함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아래 <표 3>의 자료를 살펴보면 납세협력비용은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출액 10억 미만 법인의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925만원이고, 10억 미만 개인사업자의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988만원이다. 그러던 것이 매출액이 50억 이상 500억 미만 법인에서는 평균 납세협력비용이 5,440만원으로, 개인사업자는 1,937만원으로 증가하고 1,000억 이상 법인들 의 경우에는 평균 납세협력비용이 1억 7,259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규모가 커질수록 납세와 관련된 협력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납세협력비용과 실제 납부세액과의 관계는 약간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납부세액도 증가하는데 이러한 납부세액의 증가율이 납세협력비용의 증가율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납부세액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납세협력비용이 매출액 증가에 따른 변동비의 성격보다는 사업자에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소규모 사업자들이 대규모 사업자들보다 납세협력비용의 부담을 더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절대적인 금액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대규모 사업자들보다 더 작은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지만 실제 납부하는 세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더 높은 비율의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세금보다 세금을 내기 위한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아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야 납세자들이 느끼는 총 세금비용(=납세액+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9) 김형준과 박명호(2008),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제42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움 세미나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표 3〉 매출액 규모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구 분	법 인				개인사업자			
	매출액 (백만원)	납부세액 (만원)	납세협력 비용 (만원)	납세협력 비용 /세액(%)	매출액 (백만원)	납부세액 (만원)	납세협력 비용 (만원)	납세협력 비용 /세액(%)
10억미만	653.6	5,825.9	925.2	15.88	521.1	6,313.3	988.8	15.66
10억이상 50억미만	2,902.6	12,381.2	2,875.9	23.23	2376.7	16,762.3	1,236.5	7.38
50억이상 500억미만	15,955.7	68,836.4	5,440.3	7.90	11,064.6	65,156.2	1,937.7	2.97
500억이상 1,000억미만	75,400.1	275,198.7	6,334.7	2.30	—	—	—	—
1,000억이상	602,396	1,893,570	17,259.4	0.91	—	—	—	—

주) 자료 : 김형준 · 박명호,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8.2, p.32.

나. 납세협력비용 감소액 추정

위 <표 3>의 자료에 의한 납세협력비용은 내부의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나타내므로, 여기에서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만을 기준으로 납세협력비용 감소액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전자장부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는 일차적으로 규모가 작고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장신고 사업자 중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간편장부 대상자¹⁰⁾와 추계신고 사업자 중 외부에 비용을 지급하고 세무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이에 해당한다.

추계신고 사업자중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상당수가 세무신고를 위해 국세청(홈택스)이나

- 10) ‘간편장부’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의 사업자에게 허용한다.

업 종	수입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세무서의 도움을 받거나, 신고대리 수준의 세금신고를 하여 외부에 지급하는 납세협력비용 자체가 크지 않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전자장부를 쓸 유인이 적은 사업자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장부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는 대부분 기준경비율 대상자¹¹⁾로 볼 수 있다.

아래의 <표 4>를 보면 2011년 간편장부신고자 1,208,464명과 기준경비율신고자 452,222명을 합하여 약 160만 명이 전자장부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로 추정된다. 사업자들이 직접 입력을 할 경우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의 하나가 계정과목분류인데 간편장부대상자와 기준경비율사업자는 계정과목분류가 필요치 않거나 거의 최소화 된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가계부를 작성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사실상 입력을 마칠 수 있는 사업자로 볼 수 있다.

<표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구 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외부조정신고자	890,436	874,057	818,621
자기조정신고자	139,365	122,382	115,376
성실납세방식신고자	566	1,098	1,703
성실신고확인신고자	69,556	—	—
간편장부신고자	1,208,464	1,148,707	1,047,443
기준경비율신고자	452,222	449,870	461,012
단순경비율신고자	941,993	933,431	892,146
비사업신고자	254,100	255,703	234,515
합 계	3,956,702	3,785,248	3,570,816

주)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해당연도

또한 앞의 <표 2> 주요 세목 전자신고 현황에 의하면 2011년 종합소득세 총 신고건수 5,005,424명 중 2,500,442명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전자신고를 하여 그 비율이 약 50%를 차지한다. 이는 사업자 중 50% 가량이 세무대리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

11) ‘기준경비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업 종	수입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6,000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2,400만원

로 위에서 언급한 전자장부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 160만 명의 인원 중에서 세무대리인을 사용하는 비율 50%를 곱하면 대략 8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전자장부를 사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평균적인 수수료가 월 100,000원임을 고려하여 영세 사업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월 70,000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가정하자. 현재 시중에서 전자장부로 신고시 대략 월 1~2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므로 최소 월 50,000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를 비용 절감이 가능한 전자장부 사업자에게 적용하면 대략 월 400억(80만 명 $\times$ 50,000원), 연간 4,800억에 가까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당장 80만 명이라는 사업자가 전자장부시스템을 사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전자장부 시스템이 보편화되면 상당수의 사업자가 이용하게 될 것이고 커다란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들은 일 년에 한 번씩 ‘세무조정료’라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납세협력비용 감소액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2. 세무서비스의 다양화

현재 기장서비스는 대부분 단순 세무신고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다른 서비스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가 발전하고 고도화 될수록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다양해진다.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단순 세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수요도 적지 않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여러 가지 컨설팅이 포함된 높은 수준의 세무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의 한 축을 구성하는 회계사들의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이른바 빅4라 불리는 대형 회계법인의 매출액은 매년 줄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나 조세부문의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표 5〉 회계법인 빅4 조세부문 매출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삼일회계법인	897	942	965
안진회계법인	447	488	590
삼정회계법인	322	337	372
한영회계법인	303	296	304

주) 자료 : 조세일보 2013.8.7

뿐만아니라 중소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들도 조세부문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자격사의 증가에 따른 고유의 업무영역에서의 과당경쟁이 원인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달과 경제민

주화에 따른 세무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이 원인이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이 공급하는 서비스는 이러한 다양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 서비스 공급자인 세무대리인의 숫자가 적은 시절에는 세무대리인이 수요자의 욕구를 고려할 필요가 별로 없었지만, 공급자가 급증하고 수요자의 욕구가 다양화되는 시점에서 세무대리인도 그들의 생존을 위해 자신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기장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세무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가장 큰 비용인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는 전자장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세무대리인과 기업이 동일한 장부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단순 입력업무에서 벗어나다면 단순 기장대리가 아닌 보다 나은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3. 합리적 장부활용

고객이 직접 장부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고객은 자신의 사업에 대한 재무적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자동적으로 생산된 장부를 통해 자신의 경영성과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세무대리인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정보를 기초로 다양한 세무나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장부 프로그램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가지 경영정보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세금의 신고·납부에 있어서도 단순한 세무신고용의 별도 장부가 아닌 실제 사업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장부를 세무신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사업실질에 맞는 정확한 세금신고를 하여 과세형평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즉 장부가 비로소 장부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4. 인력난 해소

대부분의 세무대리인 사무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매년 급증하는 세무대리인들로 인해 사무실직원들의 공급이 부족해 경력직원들의 몸값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방법으로 직원들이 직접 자료를 입력을 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하지만 전자장부가 도입되어 세무대리인 사무실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단순입력업무가 직원이 아닌 고객이나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화를 이루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렇게 절감된 인력은 컨설팅 서비스나 경영정보 제공 등 보다 나은 세무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V. 전자장부의 활성화방안

IT의 발전은 많은 것을 빠르고 편하게 만들었다. 거래증빙을 가지고 노트에 기록하며 주판과 계산기로 장부를 만들던 것이 불과 이십여 년 전의 모습이다. 그러던 것이 컴퓨터와 회계프로그램의 보급으로 증빙을 컴퓨터에 입력만 하면 장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의 발전으로 관련된 모든 신고가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이러한 입력마저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으로 불러오기를 하여 입력이 완료됨으로써 모든 장부가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설사 입력을 하더라도 차변, 대변과 같은 복잡한 회계지식이 없이 직관적으로 숫자만을 넣으면 완료되도록 프로그램은 발전하였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단순 입력이나 장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주어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거나 절약된 시간으로 더 나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기술발전에 발맞추어 전자장부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무행정 환경이 조성된다면 전자장부는 급속도로 보급되어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낮추고 사업자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장부를 자신의 사업경영에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래와 같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1.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회계·세무처리기준 도입

가. 간편한 세무·회계기준의 필요성

전자장부 사용에 가장 매력을 느끼는 사업자는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소규모사업자들이다. 이들은 인터넷 이용에 두려움이 없고, 비용절감에 민감한 계층이다. 앞의 <표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에서 이러한 사업자들을 추정하면 대략 160만 명 가까운 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납세자 중에서 가장 사업자에서는 간편장부신고자, 추계신고 사업자에서는 기준경비율신고자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단순경비율신고자는 세무대리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세무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제외하였다.

이들은 실제 장부작성에 있어서 차변·대변에 따른 복식부기가 아니라 간편한 가계부정도의 장부작성만으로도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아무런 무리가 없는 사업자들이다. 이들이 장부작성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직접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소상공자용 회계·세무처리 규정들을 정비하여 활용한다면 보다 더 간편한 회계·세무처리가 이루어 질 것이다.

한편, 2011년부터 1,800여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회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자산 100억 원 이상 등의 일정 규모 이상인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 회

계기준'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마땅히 적용할 별도의 회계기준이 없고, 기존의 회계기준은 너무나 복잡하여 중소기업이 준용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중소기업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국내·외의 지적과 함께 중소기업만을 위해 별도로 간편한 회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나. 중소기업회계기준

법무부는 2012년 4월 개정 상법 시행령이 발효되어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간의 의견을 반영하여 간단하고도 명료한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중소회사회계기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2년 12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2013년 2월 1일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거쳐 제정한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관보에 고시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의 홍보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해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나, 회사가 원할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의 특징은 중소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래유형을 중심으로 쉽고 간단하게 구성되었는데 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분량의 최소화

분량을 최소화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약 10분의 1분량으로 총 56조로 구성되어 있다. 파생상품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등 중소기업에서 흔히 발생하지 않는 거래유형에 대한 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2) 내용의 단순화

예를 들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하여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을 예시로 열거하고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추상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중에서 회사가 선택해 처리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규정하였다.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직전 회계연도와 당해 회계연도를 비교식으로 작성하지 않고 당기분만을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과거의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과거 재무제표에 소급하지 않고 해당 회계연도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무제표 작성방식을 완화하였다. 또한 자산평가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가치보다는 취득원가를 기초로 자산을 평가하는 등 규정을 단순화하였다.

이러한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영세사업자의 회계와 세무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는 경영성과의 평가라는 회계의 성격상 더 이상 간소화하

기 힘든 부분이 존재하고 이렇게 작성된 회계장부를 기초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현 제도의 틀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영세사업자들은 복잡한 회계보다는 단순히 세금신고만을 간편히 하기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위해서 가계부정도의 기록만으로 세금신고가 가능하도록 세제를 더욱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다. 소기업세무처리기준

위의 중소기업회계기준은 기존의 기업회계기준보다는 상당히 간소화되었다. 그러나 발생주의와 수익·비용대응원칙 등을 강조하는 회계의 특성상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영세한 소기업들은 경영정보의 보고라는 회계의 목적보다는 단순한 세금신고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보다 간단한 세무처리기준을 도입하여 납세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세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일정규모 미만의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간편납세제도(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정착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그 당시에 비하여 발전된 프로그램 기술과 인터넷 등의 인프라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보급과 사업자 과표 양성화 비율 상승 등으로 제반 여건이 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확실적인 제도의 도입보다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소기업세무처리기준’을 도입하여 세제를 단순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간단히 세금을 계산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의 사용을 장려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납세협력비용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의 사업자는 현금주의를 채택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배분보다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충당금이나 한도 계산 등을 단순화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실제 사업자들이 느끼는 경제흐름과 유사한 세무처리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전자증빙 및 보관 사업의 활성화

근래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고도의 정보화·페이퍼리스(Paperless)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가운데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변화에 따른 수동적 제도정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자장부 사용을 활성화하여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관행적인 기장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영세한 사업자는 어려운 회계나 세법원리에 의한 정확한 세금계산 못지않게 세금 신고·납부 과정의 간소화와 편리함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단한 회계처리기준과 세제를 도입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전자증빙의 확대

전자세금계산서만이 아니라 전자계산서가 확대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증가하면 거래는 보다 투명해 질 것이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달리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일반 영수증들도 바코드(Barcode)화 하여 전자적으로 추적 가능하게 만든다면 거의 모든 증빙들의 전자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증빙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손쉽게 확인하여 다운받고 업로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증빙입력의 상당 부분이 완전 자동화될 것이다.

나. 전자보관사업 확대

보관의무가 있는 증빙들도 「전자거래기본법」¹²⁾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¹³⁾에 보관하여 그 객관성을 인정받아 원시 증빙서류를 보관할 필요성이 없어진다면 전자장부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4항에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 적법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함과 아울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사용을 확대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12) 「전자거래기본법」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토대로 하여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체로서 전자거래 전반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전자문서의 법률관계,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공인인증기관의 운용지침, 전자거래 촉진정책의 수립과 추진 기반조성에 따른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장애를 제거하고 전자거래에 대해서 전통적인 상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하며, 또한 전자거래 이용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적인 전자거래를 촉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제모델을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내의 기존 법체계와의 상충 가능성이 있고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이 빈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13) ‘공인전자문서센터’란(舊,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전자문서 보관 등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전자문서 보관 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 중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즉, ‘공인전자문서센터’란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문서의 내용 및 송·수신 여부 등을 증명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기관(TTP : Trusted Third Party)이다. (위키백과)

즉, 쪽지 형태의 증빙들을 가지고 노트 형태의 종이장부를 만들던 과거의 방식이 컴퓨터와 회계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쪽지 형태의 증빙들을 가지고 컴퓨터에 파일형태로 보관되는 넓은 의미의 전자장부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쪽지 형태의 증빙들도 전자파일형태로 바뀌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은 전자증빙의 사용과 보관이 편리해지고 확대되면 궁극적으로 모든 회계·세무 처리작업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페이퍼리스(Paperless) 형태의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다.

V. 결 론

국가는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그 재정의 근간으로 삼는다. 이러한 세금을 거두기 위해 정부는 조직을 만들고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징세활동을 하게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징세비라고 한다. 아울러 납세자도 이러한 징세활동에 협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이행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납세협력비용이라고 한다. 세금을 거둘 때는 이러한 징세비와 납세협력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흔히 세금을 거두는 것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거위털을 뽑는 기술”이라고 한다.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면서 느끼는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다. 납세협력비용은 임직원이 사용한 내부인건비, 외부대리인을 고용하는데 지불한 외부인건비, 그리고 기타의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인건비란 대부분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그 중의 상당부분도 결국 인건비의 형태로 지출된다.

본래 장부는 사업자가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사업내역을 숫자로 표현하고 정리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장부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도구가 회계이고, 이렇게 표현된 회계장부를 기초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한다. 경영정보를 얻기 위한 회계의 결과물인 회계장부를 가지고, 다시 세금신고를 위한 세무장부를 거치다보면 그 내용의 복잡성과 어려움은 일반 사업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은 인건비 성격의 추가적인 내·외부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소규모사업자들은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복잡한 회계장부보다는 간단한 세금신고용의 장부를 더욱 필요로 한다. 이들은 대개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사업내역을 기록하고 경영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장부가 절실한 상황이다. 거래증빙의 수수와 입력, 장부작성 등이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장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킬 것이다.

최근 발전된 IT기술과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거래 증빙의 수수료와 입력을 단순화, 자동화하는 전자장부가 세무대리시장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술발전에 따른 큰 흐름으로 이러한 전자장부는 앞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면 불합리한 인건비를 상당부분 줄여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자장부는 소규모 기업이 직접 증빙의 관리와 장부작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세무·회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재무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세무대리인도 사업자와 장부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를 일치시킴으로서, 실제 장부에 의한 성실한 세금신고·납부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확실적인 단순 기장대리에서 나아가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무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사업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무리 소상공자라도 정확한 세무신고·납부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조언과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업자가 직접 입력을 하거나 혹은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납세협력비용의 절감분은 세무대리인과 사업자가 거래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역할에 따라 시장에서 적절히 배분될 것이다. 이러한 전자장부의 이점은 곧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세무서비스의 수준향상으로 이어져 사회의 경제적 효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전자장부의 활성화 방안으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회계·세무처리기준 도입과 전자증빙 및 보관 사업의 활성화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회계·세무처리기준 도입에서는 간편한 세무·회계기준의 필요성에 이어서 중소기업회계기준, 소기업 세무처리기준의 두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전자증빙 및 보관 사업의 활성화에서는 전자증빙의 확대와 전자보관사업 확대의 두 가지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장부 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과세관청의 징세비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고, 세무대리인이 보다 높은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국세청. 1999. “전자기록의 보전방법등에 관한 고시”
- 국세청. 2003. “전자기록의 보전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2003-34호
- 국세청. 2009. “전자기록의 보전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2009-48호
- 김병일. 2011.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4호 : 213-243
- 김윙희. 2012. “세무서비스시장 개방과 외국자문사제도에 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9권 제4호 : 45-78
- 김형준·박명호. 2008.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서희열·김상철. 2000. “우리나라 전자장부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무조사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권 제1호
- 송헌재. 2012.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신용림. 20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세로)에 대한 이용자만족도와 성과에 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9권 제4호 : 79-120
- 심태섭 외. 2005. “간편납세를 위한 전자장부 도입 방안”. 한국세무학회 연구용역보고서
- 이전오. 2008.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The Advent of Automatic Bookkeeping System and its Activation Plan

Sang—Moon Kim* · Hi—Youl Suh**

〈Abstract〉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dissemination of computer has brought a considerable change to the tax accounting market. Tax accounting has developed from bookkeeping and filling tax forms with hands using documentary evidence made of paper to entering data into a computer and filling tax forms with tax accounting program. Furthermore, automatic bookkeeping system which enables people to enter data and do the books automatically with the help of computer and tax accounting program has appeared in many different forms on the market. Businessman does his own books and uses it for the purpose of managing his own business. In spite of the existence of this book, tax agents office does another book for the purpose of tax report with the same transaction evidence inefficiently, and in some cases these two books do not match up and lead to confusion. This inefficiency has not only increased tax payment cooperation cost of businessman but also put tax agents service as a simple bookkeeping and tax report procuration. But with the advancement of program, delivery of transaction evidence and bookkeeping has been automated, which has changed the paradigm of tax accounting service. Automatic bookkeeping system which businessman does his own books with the computer automatically and share it with the tax agents, saves the labor and time which are required for the tax agents to make additional tax reporting books. These cost—saving benefits will be divided between the businessman and tax agents according to the level of contribution. This will serve as a momentum which will save the tax payment cooperation cost of businessman and will force the tax agents to make a new leap forward on his tax service. Saving of the tax payment cooperation cost of businessman will promote his taxation faithfulness and the tax agents will serve various tax services from the simple tax report procuration. To obtain this results, the government should simplify the accounting · taxation standards first. Specially, the small scale enterprise need a simple accounting · taxation standards which are accessible and easy to understand because the reason to do the books is mainly for the tax reports not for the business management information. Secondly, to promote using the automatic bookkeeping system,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the electronic evidence project such as electronic tax invoice etc. and boost certified e—document authority project which will lead to paperless office environment.

〈Key words〉 automatic bookkeeping system, tax payment cooperation cost, electronic evidence

* Tax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Kangnam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Tax Science, Kangnam University